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4
----------	------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박영동 의원,
최재규 의원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달성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 나. 마을공동체미디어운영단체에 대한 정의 확대(안 제2조)
- 다.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용어 정비(안 제3조)
- 라.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4조)
-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로 하고, “군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체”를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군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마을공동체”를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종전 제8조) 중 “외에는” 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로 한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u> <u>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u>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u>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u>을 도모하여 <u>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u>” 이란 <u>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u>을 말한다. 3. “<u>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u>” 란 <u>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체</u>를 말한다.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u>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u></p>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 달성군</u> <u>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_____ <u>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u> _____ <u>대구광역시 달성군민</u>_____.</p> <p>제2조(정의)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_____<u>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 이라 한다)</u>에서 _____. 3. _____ <u>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u>_____.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_____</p>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2. (생략)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②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립하여야 한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지원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위
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신 설>

제8조(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준용) -----
-----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2.10.28. 제정시행)

제8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교육·양육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6.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
4.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